

2020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계획

「진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」 제정에 따라 공직사회의 적극적인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, 선정된 공무원에게 인사 상 우대조치 부여

I | 관련 근거

-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」 대통령령 제30018호 (2019. 8. 6)
- 「진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」 조례 2470호(2019. 12. 31)
- 「20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」 (2020. 3. 18.)

II | 추진 개요

개 요

- 선발인원 : 2명 이내 ※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 조정 가능
- 공적기간 : '19. 7월~ '20. 5월 기간동안 추진된 적극행정 사례
※ 공적기간 이전에 착수하였으나 공적기간 내 성과가 창출된 경우도 포함
- 선발대상 : 적극행정 추진 우수공무원
- 훈 격 : 군 수
- 심 사 : 적극행정지원위원회
- 인센티브
 - 「적극행정 운영규정」에 따른 인사상 우대조치 1개 이상 부여
 - 근무평정가점 : 0.5점 부여
 - 포상금 지급(진안고원행복상품권 수여)
 - 소요예산 : 150만원(최우수 100만원, 우수 50만원)
 - 글로벌 해외연수 가점 부여

선발요건

- 적극행정 업무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한 자
- 창의적· 도전적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자

-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, 민원 또는 주민갈등 해결, 공공 서비스 질 향상, 새로운 정책 발굴 추진, 행정효율 향상 등에 기여한 자
- 복합민원 적극처리에 귀감이 되는 자
- 그 밖에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우리군 공무원에게 귀감이 되는 자

Ⅲ 심사기준 및 선발절차

□ 심사기준 및 분야

- (심사기준) 단순히 실적과 능력이 뛰어난 우수자를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, 구체적인 적극행정 사례를 중심으로 선발

구 분	배점	주 요 내 용
합 계	100	
*군민 체감도	30	▶ 군민 생활편의 및 만족도를 제고하거나 재정 절감에 기여 하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정도를 평가
과제의 중요도 및 난이도	20	▶ 군정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도 ▶ 주변 환경(민원, 상위법, 관례 등)이 과제 추진에 어려움을 주는 정도 등을 평가
*담당자의 적극성 창의성 전문성	40	▶ 새로운 정책 발굴, 이해 조정 및 협업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정도를 평가 ▶ 해당 과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해결하거나 전문 지식, 경험 등을 활용하고 적용한 정도
정책 확산 가능성	10	▶ 타 기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

(* 우선순위 지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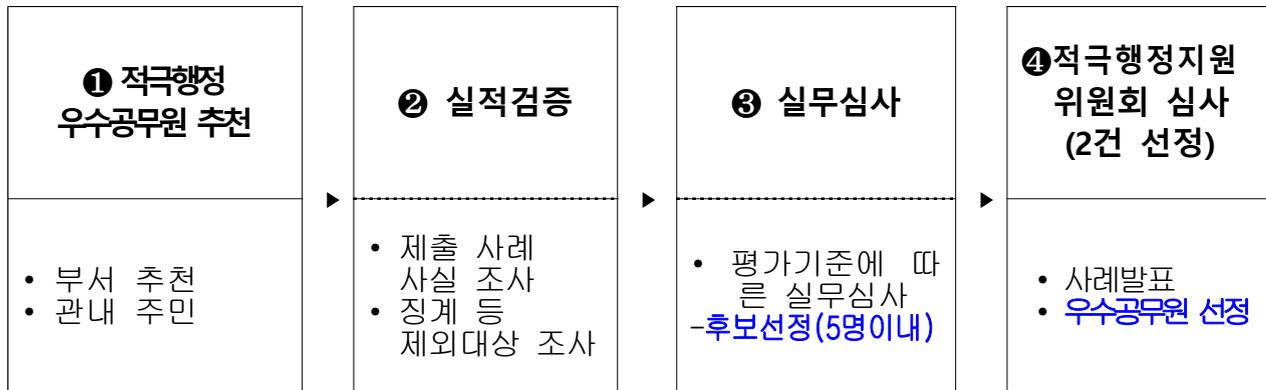
- ※ 대상사례 및 대상자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- 최우수 (90점 이상), 우수(80점 이상)

- (심사분야) 규제혁신, 민원 또는 갈등 해결, 공공서비스 질 향상, 새로운 정책 발굴·추진, 행정효율 향상 등에 기여한 정도를 기준에 따라 평가

【제 외 대 상】

- i) 기 수상사례 및 기존 유사사례의 일부 내용을 단순 수정·변경한 경우
단, 과거 사례를 추가 개선하여 새로운 성과가 발생한 경우는 인정
- ii)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,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
- iii) 평소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 등을 야기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

□ 선발 절차



① 우수공무원 추천

- 부서 추천(붙임1 서식), 군민추천(군 홈페이지)
- 업무실적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추천
- 해당과제 추진자가 다수일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1명 추천
- 주민 추천된 직원은 소속부서에서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검토하여 내부추천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

② 실적 검증

- 제출사례 사실조사 및 징계 등 제외대상 조사
- 조사결과서(붙임2 서식) 실무심사 시 첨부

③ 실무 심사

- 실무위원 : 4명(기획팀장, 감사팀장, 행정팀장, 법무규제팀장)
- 심사방법 : 심사평가표(붙임3, 붙임4)에 의한 심사
- 후보선정 : 심사결과 고득점자순 5명 선정

※ 사례제출 건수가 5건 미만일 시 미개최

④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심사

- (심사방법)
 -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
 - 심사대상자 적극행정 발표 및 성과평가(안전당 5분이내, 질의응답)

- 점수산정 : 평가위원 최고와 최저를 제외한 평균점수
- 최종선정 : 우수공무원 2명 이내 선정
 - * 2명 이내로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조정 가능
- 동점인 경우 우선순위 지표*의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
- (심사의결) 우수공무원 선정

IV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

□ 행정사항

- (전부서) 우수공무원 추천
- (기획감사실, 행정지원과) 제출된 우수공무원 징계 등 제외대상 조사
- (행정지원과) 우수공무원 선정 후 인센티브 부여

□ 추진일정

-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계획 통보 : 2020. 5. 27.
-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추천 : 2020. 6. 5일한
 - 부서추천 및 기관단체추천(홈페이지) 등
-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심의·의결 : 2020. 6. 26일한

붙임1**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추천사례****분 야**

- 규제혁신 민원갈등 해결 공공서비스 질 향상
 새로운 정책 발굴 추진 행정효율 향상

사례 제목	부서명	
	담당자	
	구 분	(부서, 군민)

사례중심으로 내용을 키워드 중심으로 2~3줄 내외로 요약

※ 추진성과 또는 구체적 성과가 없는 경우도 추진과정, 문제해결절차 위주로 작성가능

□ 추진배경

○ 휴먼명조 15

- 휴먼명조 14

* 중고덕 13

□ 추진내용 또는 추진경과(본인이 추진한 내용 자세히 표기)**□ 주요성과 또는 기대성과(결과)****※ 기타 참고사항**

- 1) 분량: 사례내용 최대 4페이지이내 작성, 관련 참고자료 최대 10페이지 첨부가능
- 2) 내용: 선택한 적극행정 유형이 잘 드러나고, 심사위원도 이해하기 쉽게 작성
 - ① 특히, 주요성과는 계량적·비계량적 성과를 반드시 작성
 - ② 추진 이전(As-Is)과 이후(To-Be)의 모습이 잘 대비되게 작성
 - ③ 업무담당자가 겪었던 실무상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
- 3) 증빙자료: 상기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보고서(결재본), 사진, 언론보도, 특허출원 및 자격증 사본, 성과보고서, 만족도 조사결과 등 참고자료로 첨부
- 4) 동일사례 1인만 추천 가능
- 5) 용량: 용량이 큰 사진 및 참고파일은 반드시 파일 용량을 작게 하여 제출
- 6) 개인정보: 참고자료 등 작성 시 개인정보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